구분 내용규정 수익자 과세신탁 신탁이 도관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위탁자 과세신탁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재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한 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수탁자 과세신탁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납세의무 부담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2항